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24
------------	-------

발의연월일 : 2019. 3. 21.

발의자 : 이찬열 · 전혜숙 · 황주홍
이동섭 · 박찬대 · 전재수
김종회 · 신용현 · 임재훈
이용득 · 김현아 · 박주민
유동수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컴퓨터, 스마트폰 등 IT기술의 발달로 전자적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고 있음.

이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3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공보에 공고하고”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 ② (생략)	제6조(낚시통제구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u>공보에 공고하고</u>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 ----- ----- ----- ----- ----- ----- ----- <u>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u>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